



제1557호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6 3 6 호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
○ 공	고 제 1 7 1 0 호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5
○ 공	고 제 1 7 2 6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9
○ 공	고 제 1 7 3 0 호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1
○ 공	고 제 1 7 3 5 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5
○ 의 회 사 무 국 제 공 공 고	3 2 호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36

고 시

○ 고	시 제 1 3 7 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48
○ 고	시 제 1 3 8 호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50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696호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정의 및 수정이 필요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제1항)
- 마을활동가 명칭 수정(안 제2조, 제10조, 제27조)
-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8조)
-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안 제22조)
-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제3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83, FAX 453-2205)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정의 및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위원회 구성의 현실화 필요
-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완화(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제1항)
- 마을활동가 명칭 수정(안 제2조, 제10조, 제27조)
-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8조)
-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안 제22조)
-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제3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 활동가”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을 “주민간”으로, “회복을 지향한다.”를 “회복 지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주민”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를 “다양성 존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주민”으로, “통해 추진한다.”를 “통한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 만들기는 환경”을 “환경”으로, “지향한다.”를 “지향”으로 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제4조 중 “기여해야”를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마을일꾼”을 “마을활동가”로 한다.

제12조 중 “추진경과”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진경과”로, “할”을 “하게 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를 “허위”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남동구 재

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들기” 를 “만들기에”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마을 만들기” 를 각각 “마을공동체”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동부위원장 2명” 을 “부위원장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되고, 공동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을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으로, “1명을 호선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2회” 를 “연1회 이상” 으로 한다.

제23조 중 “부서장” 을 “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으로 한다.

제26조 중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로,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 을 “설치하여 운영” 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마을 만들기 일꾼” 을 “마을활동가”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마을만들기” 를 “마을 만들기” 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위탁” 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수탁기관” 을 “수탁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 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위탁사무 지도·감독” 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될” 을 “인정할” 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견진술” 을 “통보하고 의견진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된” 을 “해제 또는 해지 된” 으로 한다.

제31조 중 “바에” 를 “바를” 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 5. (현행과 같음) 6. “마을 활동가”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3조(기본원칙) ----- ----- -----. 1. 주민간----- ----- --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주민 ----- ----- 다양성 존중 4. 주민----- 통 한 추진 5. 환경----- ----- 지향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
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
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
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10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

9. · 10. (생략)

제12조(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추
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
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
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
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
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 기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

제10조(사업지원) -----

-----.

1. ~ 7. (현행과 같음)

8. 마을활동가 -----

9. · 10. (현행과 같음)

제12조(중간점검) -----
----- 소
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진경과-

----- 하게 할 -----
--.

제13조(포상 및 홍보) -----
-----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
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
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
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구
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
된 재산은 인천광역시장과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
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재
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마을 만들기 관한

홍보할 수 -----

--.

제14조(사업비의 환수) -----

---- 인정할 -----

-----.

1. ~ 4. (현행과 같음)

5. 허위 -----

--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

----- 다른 -----

-----.

-----.

제16조(준용) -----

----- 「남동구 재

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만들기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생략)

제2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 3. (생략)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체 -----

5. 마을공동체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
--- 부위원장 1명-----
-----.

② -----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
-----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

----- 연1회 이상 -----

-----.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간사) -----

----- 부서의 장-----.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

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마을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6. (생략)
7.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 8.·9. (생략)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설치하여 운영-----.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활동가 -----
--
6. (현행과 같음)
7. 마을 만들기 -----

- 8.·9. (현행과 같음)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

-----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수탁기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

-----.

⑥ -----

----- 따른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

-----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

-----.

② -----

----- 인정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보하고 의견진술-----

--.

③ ----- 해

제 또는 해지 된 -----

다.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u>바에</u> 따른다 <u>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 ----- ----- <u>바를</u> ----- -- <u><삭 제></u>
---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20- 1710호

2020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신규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나.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다. 설치 장소

연번	장소
1	논현고잔동 논현스타벅스 앞 삼거리(논고개로 67-1)
2	만수1동 만수남광하우스스토리아파트 앞 삼거리(구월로372번길 90)

라.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3. (공고일로부터 21일)

마.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로 문의
(☎032-453-5193)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2020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신규 설치			
2. 당 사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1. 논현고잔동 논현스타벅스 앞 삼거리(논고개로 67-1)

■ 위치도면



■ 현장사진



2. 만수1동 만수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앞 삼거리 (구월로372번길 90)

■ 위치도면



■ 현장사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26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8.26. ~ 2020.9.9.
3. 공고대상 : 경기1호4868외 3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 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0-00184	경기1호 4868	포텐사오토	남동구 남동동로 56 기전폐차사업소 내	김*후	경기도 광*시 가*****번길 3-* (철*동)	2020.7.14. 2020.8.3.	기타 기타	2020.7.6.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2	2020-00185	31수6194	SM520택시	남동구 남동동로 56 기전폐차사업소 내	S***웁	경기도 가평군 *면 *리 1**번지 1*호	2020.7.14. 2020.8.3.	배달 기타	2020.7.6.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20-00187	73노1684	카니발	남동구 남동동로 56 기전폐차사업소 내	(주)아*** 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로 1*, 남****딩 **4호(고*동)	2020.7.14. 2020.8.3.	수취인 불명	2020.7.6.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4	2020-00189	86거4216	그레이스6밴	남동구 남동동로 56 기전폐차사업소 내	이*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번길 7 (용*동)	2020.7.14. 2020.8.3.	기타 기타	2020.7.6.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30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준 일 : 2020. 7. 1.기준
- 대 상 : 388필지(2020.1.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
- 기 간 : 2020년 9월 1일 ~ 9월 21일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조회 가능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0년 9월 1일 ~ 9월 21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 6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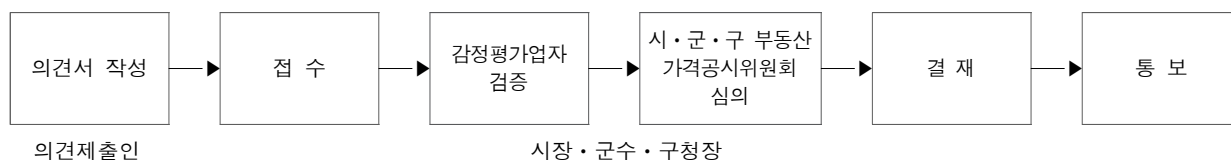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 / m²	의견가격 원 / m²
	의견제출사유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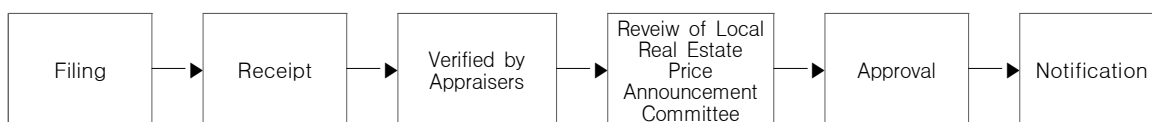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35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설치(안 제2조)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 예수·예탁의 이자(안 제8조)
- 존속기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4,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0.06.09.)에 따라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자금을 예수탁 및 전출입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설치(안 제2조)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 예수·예탁의 이자(안 제8조)
- 존속기한(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남동구 금고(이하 “구 금고”로 한다)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례에 따른 관련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자이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66조의2까지를 삭제한다.

②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3조(자금이체)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56조에 따라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56조에 따른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른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2호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견학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의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행,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5. ~ 8. 31.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151,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 (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6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5일
발 의 자 : 반미선 · 강경숙 의원
찬 성 자 : 오용환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견학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의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행, 공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3조
-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
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공고 등)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남동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등) 업무담당자는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견학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종료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의회 견학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인원: 명 (남: 명 / 여: 명)	
	주소					
	성명 (인솔자)		연락처			
견학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학목적						
견학회망시설 (“√” 표기)		본회의장	상임 위원회실	특별 위원회실	방송실	기타
견학소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남동구의회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의회 견학 관리 대장(제8조 관련)

[illegible]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사무국장 임 덕 규 (인)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양산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4조(견학의 신청 등) ① 견학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사무국장이 승인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다.

제5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

여야 한다.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의회사무국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7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0호(2017.12.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9-20호(2019.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일원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 일원(구월동 70-16)
 - 나. 면적 : 55,707.9㎡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76번길 24, 2층(구월동, 금제빌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년 8월 21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 1) 토지이용계획

(단위 : ㎡)

합계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원	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소계	종교 (존치)	종교 (분양)
55,707.9	42,756.8	11,536.9	6,046.6	3,908.3	1,030.6	551.4	1,414.2	612.3	801.9

2) 건축 연면적 : 151,990.57㎡

3) 건축물 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1,115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내용(세대수)							상가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39형	59A형	59B형	74형	84A형	84B형		종교/근린생활시설	종교(존치)
계	1,115	60	344	365	134	129	83	685.5700	801.90	612.30
토지등 소유자	615	-	239	164	101	68	43	52.0024	-	612.30
보류시설	5	-	5	-	-	-	-	-	-	-
일반분양	435	-	100	201	33	61	40	633.5676	801.90	-
임 대	60	60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단위 : ㎡)

구분	신설(무상귀속)					폐지 (무상양여 : 10,738.2)		
	계	공원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계	도로	주차장
면 적	11,536.9	6,046.6	3,908.3	551.4	1,030.6	10,787.7	10,393.3	394.4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 6. 22. ~ 2020. 10. 31.

6.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2)에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보입니다. 끝.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8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0. 8. 25.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0년 8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첨부]

-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간석1동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감소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효율성 강화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남동구 고시 제2017-124호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2. 조정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 적용
 - 반 : 30내지 100세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3. 조정사유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이주로
24,25통 세대수 감소
 - 24통 : 7세대 18명 / 25통 : 8세대 16명 ('20. 7.31.기준)
- 해당구역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인 2022년까지 세대수 증가
요인이 없음

4. 조정내역

- 총괄내역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 동 구	880	3,785	△2	△10	878	3,775
간석1동	45	212	△2	△10	43	202

- 조정내역

구 분	조정대상(현행)		조 정 후		증감현황	
	통	반	통	반	통	반
합 계	2개통	10개반			△2	△10
간석1동	24통	1~5반	30통	5반	△1	△5
	25통	1~5반	30통	3반	△1	△5

통·반구역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0. 8. 21.

동명 \ 구분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80	3,785	-2	-10	878	3,775	
구월1동	48	189	0	0	48	189	
구월2동	49	211	0	0	49	211	
구월3동	61	220	0	0	61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45	212	-2	-10	43	202	
간석2동	35	155	0	0	35	155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5	215	0	0	45	215	
만수1동	44	176	0	0	44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3	211	0	0	43	211	
만수5동	33	184	0	0	33	184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6	248	0	0	46	248	
논현2동	46	215	0	0	46	215	
논현고잔동	44	190	0	0	44	190	